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과도한 방역관리 요구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등록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2. 9. 23. ~ 11.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

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5호의2 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희망기간 및 정지 사유 등을 검토한 후 등록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3 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해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으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생산·가공시설이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의2(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5호의2 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희망기간 및 정지 사유 등을 검토한 후 등록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 해제 신청서를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으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생산·가공시설이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생산·가공시설 등록번호
	주소(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정지 희망 기간	. . . 부터 . . .까지 ※ 정지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기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정지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제7항에 따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검 토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처 리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통 보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생산·가공시설 등록번호
	주소(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해제 희망 날짜	. . .	
해제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제9항에 따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검 토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처 리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통 보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